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EP017]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 BNK글로벌배당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합니다.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위험, 재간접 투자 위험, 자산배분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한도출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월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분배금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 분배기준일 :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 3) 분배금지급일 : 분배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2(분배금의 지급 등), 제31조의3(분배금의 지급연기) 및 투자설명서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여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주식, 대체투자(원자재, 인프라, 리츠 등)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은 채권 관련 ETF에 투자하고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관련 ETF에는 50% 미만 투자 √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시장 환경에 따라 주식, 채권, 실물자산등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추구 [상세 투자전략] ① 월배당 특화 유니버스 √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글로벌 월배당/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유니버스 구성 √ 시가총액, 거래량, 배당주기, 배당수익률, 운용보수 등을 종합적 고려 ② 투자결정 프로세스 √ 주요 투자결정 요인을 수치로 산출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종목을 검증 및 평가 √ 개별 종목 및 자산군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분류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0% 이내	0.800	0.40	0.860	0.800	179	313	452	745	1,5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100	0.70	1.210	1.100	161	327	499	861	1,87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0.600	0.20	0.580	0.600	134	248	366	615	1,3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750	0.35	0.750	0.750	125	255	389	674	1,484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보수인 연 0.47%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세진	1979	책임 (수석매니저)	3 개	673억	-	-	-	-	13년 11개월
신지환	1997	부책임 (파트너)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강세진- 0개, 0억 / 신지환- 0개 0억]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자산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투자신탁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인프라 관련 ETF는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므로 부동산과 대체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관련된 위험이 수반됩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자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월 분배금 지급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분배금을 매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하는 자산들의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또는 대량 한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원본손실 및 분배금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월 분배금 지급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월배당금 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서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하락 및 투자원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담하여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12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 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 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 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 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 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펀드, 전문투자 자 및 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 는 법인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